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 국가정보원

수신자 조태욱(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3가) 3층)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2020-205

접수일 2020-12-24

청구 내용	제목 : KT 조태욱의 해고 관련 국정원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KT에 1989.10.23. 입사하여 2010.4.1.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해고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추진한 KT노조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대해 2009.7.13.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본인의 해고 관련한 국정원 자료에 대해 첨부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불임1 > 참조	
공개 내용	< 불임2 > 참조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불임2 > 참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가정보원



기안자

협조자

시행

우

전화번호 111

00-0000(2021.1)

주소

팩스번호

검토자

결재권자

/ 홈페이지 주소 [www.nis.go.kr](http://www.nis.go.kr)

/ 공개 구분  
210mm × 297mm [백상지(80g/m<sup>2</sup>)]

##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go.kr](http://www.simpang.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불임 1 >

청구인 조태욱은 KT에 1989.10.23. 입사하여 2010.4.1.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해고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추진한 KT노조민주노총탈퇴공작에 대해 2009.7.13.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본인의 해고 관련한 국정원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KT는 CP(C-Player약어) 퇴출 대상자 1,002명 명단을 2005.4.1.자 작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을 2006년초부터 실행하였습니다. CP퇴출대상자 1순위는 민주노조 활동하는 현장조직 민주동지회(약칭 민동회) 소속 직원들이었고 청구인 조태욱은 민주동지회 회원(2009년~2010년까지 민동회 의장 역임함)이었기 때문에 CP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CP퇴출프로그램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의 2010.4.1.자 해고도 CP대상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CP퇴출프로그램은 특히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척결('종북좌파 척결'이라 칭했음)과도 일맥상통 하였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KT에서 실행된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원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 청구인 조태욱은 국정원의 불법공작으로 실행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009년7월13일 KT분당 본사사옥 앞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공식명칭은 'KT노조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2020.12.23. 송달된 문건 "KT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및 조치 필요사항(保安)\_2009.7.7."에는 "7.17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反집행부 및 민노총의 탈퇴 방해•위해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라고 명시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KT본사 및 주요 지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비롯하여.."라고 적시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9.7.13. 개최된 KT노조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를 국정원은 확보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09.7.13. 기자회견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3. 당시 기자회견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용과 형식에 위법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7.13.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KT이석채 회장은 청구인 조태욱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 13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다섯가지 범죄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치러진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해 사측이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국정원이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탈퇴반대자들을 고소하도록 국정원의 사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참가를 목적으로 제출된 연차휴가도 모두 불승인되고 무단결근 처리된 점도 국정원이 개입하였다고 봅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기자회견 참가자 13명에 대한 KT사측의 고소와 관련한 국정원 보고서 등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4. 청구인 조태욱은 2009.7.13.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2009.8.31. 징계위원회(KT인천마케팅단 보통인사위원회)가 열려 '감봉6월' 중징계(해고 바로 아래 징계)를 2009.9.4.자 받았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에 대한 감봉6월 징계와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5. 청구인 조태욱은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감봉6월 징계를 받은데 이어 2009.9.30.자 인천 계양지사에서 무려 375km 떨어진 경남 삼천포 지사로 비연고지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민주노총탈퇴공작을 진행했던 국정원이 개입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 조태욱의 삼천포 지사 2009.9.30. 전보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6. 청구인 조태욱은 경남 삼천포 지사로 2009.9.30.자 전보된 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택도 부여받지 못하였고, 노조사무실에서 숙박하려 하였으나 지사장이 야전 침대를 꺼내고 노조사무실 열쇠를 직접 관리한다며 거부하였고, 삼천포지사 건물 어떠한 부분도 퇴근 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결국 삼천포 지사앞 텐트노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청구인 조태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09.9.30. 삼천포 지사 전보 이후 사택 미부여 및 노조사무실 이용 불가 그리고 경남 삼천포 지사앞 텐트 설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7. 청구인 조태욱이 삼천포 지사로 2009.9.30.자 전보발령이 나자 kt민주동지회(약칭 민동회) 회원 수십 명이 분당 본사앞에서 모여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2009년 9월말경 개최하였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09년9월말경 개최한 부당발령 철회 촉구 분당사옥앞 촛불집회 관련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8. 청구인 조태욱은 경남 삼천포 지사로 2009.9.30.자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추석연휴(10.2~10.4)와 겹치게 되어 3일간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2009년10월6일 인천 만석동 소재 집에서 새벽에 차를 물고 출발하여 삼천포 지사에 아침 8시30분경 도착하였습니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택미부여 노조사무실 이용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삼천포 지사앞 인도에서 텐트노숙을 2009년10월7일부터 시작하였으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며칠간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2009년10월12일 저녁 격려 방문 온 사천시의원(이정희)가 지사장 고한두에게 경비실에서 전기를 텐트에 공급해 주도록 주선하여 그날밤은 텐트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10월13일 저녁 텐트에 전원을 전날처럼 연결하려 하였으나 경비가 막아나셨고 누구의 지시인지 묻자 지사장 고한두의 지시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본사에서 지사장에게 전원을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후에 국정원이 공작이 있었다고 봄이 적확할 것입니다. 결국 경비에게 지시하고 퇴근하려는 지사장 고한두와 전기공급 관련 약 30초간 옥신각신 마찰이 있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주고 퇴근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어떠한 폭행도 없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09년10월13일 경남 삼천포 지사앞 텐트노숙 전기공급과 관련한 지사장 고한두와의 마찰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9. 청구인 조태욱은 2009년10월13일 삼천포 지사앞 차가운 텐트에서 뜯 눈으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전입자가 신고식을 하는 관례에 따라 삼천포지사 같은 팀소속 직원들과 지사장 고한두 등과 함께 삼천포지사 인근 다영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카드 결제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점심식사까지 함께 하였던 지사장 고한두는 그날 오후 3시경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인근 삼천포 서울병원 특실(3층)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다음날인 10월15일 청구인 조태욱은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을 해고시키기 위한 수순을밟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고한두 지사장이 입원한 삼천포 서울병원 특실(3층)에 병문안을 갔으나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사장 고한두가 입원한 특실은 텐트까지 약 100m 정도 거리였고 텐트노숙 장면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곧바로 담당 의사 박창규(부원장)를 만나 고한두 지사장 상태를 물어보니 아무런 상처나 외상도 없다고 하였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며 소위 '나이롱 환자' 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09년10월13일 텐트노숙 전기공급 관련 사소한 마찰로 지사장 고한두가 10월14일 오후 청구인 조태욱을 고소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구인 조태욱은 국정원이 삼천포 지사장 고한두가 2009년10월13일 마찰 이후 2009년10월14일 오후 청구인 조태욱을 고소 및 인근 삼천포 서울병원 입원과 관련한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

개를 청구합니다.

10. 청구인 조태욱은 2009년7월13일 민주노총 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2009년12월17일 약식명령으로 별금 1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하였으나 결국 별금 100만원으로 2010년8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2010고정396)에서 조정된 채로 대법원에서 2011.7.14.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 관련 별금 부과 및 정식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1. 청구인 조태욱은 삼천포 지사 텐트노숙 과정에서 전기공급 관련으로 지사장 고한두가 고소하여 약식명령으로 별금 100만원이 2009.12.30.자 부과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법 진주지원(2010고정365)에서 2010.10.19.자 7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창원지법에서 2011.9.8.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삼천포 지사 텐트노숙 관련 별금 부과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2. 청구인 조태욱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09.12.7 판정)와 중앙노동위원회(2010.3.3.판정)의 부당발령 및 부당전보 판정에 따라 경남 삼천포 지사에서 인천 계양지사로 2010.3.15.자 원대복귀 되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판정과 삼천포 지사에서 계양지사로 원대복귀 관련 국정원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3. 청구인 조태욱은 2009.3.15.자 원대복귀 후 약 일주일 후 KT에서 해고시키기 위한 2010.3.30.자 징계위원회9인천마케팅단 보통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받게 됩니다. 결국 2010.3.30.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0.3.31.자 해고 처분통지서를 받았고, 2010.4.1.자 해임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의 해고처분은 결국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반대를 표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2010.3.30.자 징계위원회 및 해고 처분 등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4. 청구인 조태욱이 2010.4.1.자 해고 이후 진행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0.8.26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0.11.23.자 해고정당 판결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되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및 소송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국정원이 해고관련 노동위원회 및 이후 법원소송 관련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5. 청구인 조태욱은 2010.4.1.자 해고 직후 KT노동인권센터를 2010.4.10.자 설립하여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고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대법원에서 두차례(2013년,2015년)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어 강제적인 명퇴만 있고 정년퇴직이 없던 KT에 정년퇴직을 부활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구인 조태욱은 국정원이 2010.4.10. KT노동인권센터 설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권시기까지 센터에 대해 자행한 사찰 관련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청구항목 중 제2항 기재 정보 – 부분 공개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 1건에 대해 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 및 공개방법 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조태욱)로 1.26까지 등기우편 발송

다만, 대상 문건 중 일부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 및 제3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법 제8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2. 청구항목 중 제1항, 제3항 내지 제15항 기재 정보 – 청구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그러나 귀하가 청구서에 기재한 공개청구 정보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수행하거나 관여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위 항목들에 적시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하여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움직임관련 내부 결속에 주력

09.7.15

## 1. KT노조의

민노총 탈퇴추진에 대해 과 정상적인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위라며 파장 확산 방지에 주력

## 2. 관련 내용

### o KT노조의

에서는

-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변화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로 사측의 노조 길들이기 의혹이 짙다고 강조하고

### - KT노조는 15년전

변경하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 이런 노조가 과 정상적인 논의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노총 탈퇴 추진의 언론 선언은 부당하고  
하다며 폄하하고  
에 불과

- 의 활동노선이나 조직 운영에 전혀 변화가 없고  
KT그룹 계열사 노조들도  
인  
에 계속 잔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합원 동요 방지에 주력

### o 한편, KT노조의 현장조직인 민노총 탈퇴 반대세력 KT민주동지회는

- 7.13 경기도 분당 KT 본사 앞에서 KT노조의 민노총 탈퇴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 민주노조의 기풍을 기억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현집행부의 민노총 탈퇴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노총 탈퇴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 끝.